"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과 사회를 이음"

제4회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프로젝트 모집 공고문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청년 창업가, 예술가들의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창작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프로젝트로 제안해주세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매출·이력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07.29.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

『제4회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16일 일요일, 24:00 까지**
□ **신청방법 : www.ddd.or.kr/eum 온라인 접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4회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 **주최 및 주관** :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목적**

○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삶을 도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발굴 및 네트워킹
○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들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의 매출 및 경력 지원
○ 공익단체 활동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사업 내용**

○ **2026년 하반기(9~11월)**에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프로젝트(공익단체 활동지원, 취약계층 지원활동) 지원 진행
○ 선정된 공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및 <지지방문> 진행
○ 프로젝트 결과와 후기를 함께 공유하는 <사업결과보고회>를 통한 네트워킹 진행

□ **사업 운영 일정**

모집	⇨	심사 및 선발	⇨	선정공지	⇨	협약체결
'26.07.29.~08.16.		'26.08.17.~08.28.		'26.08.28.		'26.08.28.~31.

⇩

프로젝트 진행	⇦	지지방문 및 지원금 1차 지급	⇦	결과보고 및 지원금 2차 지급	⇦	**결과보고회**
'26.09.01.~11.30.		프로젝트 기간중		'26.12.01.~15.		**'26.12.16.**

2. 모집 개요 및 신청방법

□ **모집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 중 창업가 및 예술가

□ **지원 내용 :** 공익 프로젝트 지원금(프로젝트별 100~210만원) 및 협업 지원

□ **모집 규모 :** 5명(팀) 이상

□ **모집기간** : 2026.07.29.(목) ~ 08.16.(일), 24: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www.ddd.or.kr/eum)

□ **(서류심사 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자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 단계에서는 [사전설문]으로 대상여부만 확인하며,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 서류 제출 진행을 안내 드립니다.

증빙 항목	제출 서류
사업정보 및 대표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술 활동 여부 확인	예술 관련 주요 활동이력 또는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대표자 확인	신분증(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 확인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3.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분야

○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래와 같은 공익프로젝트(공익단체 활동지원, 취약계층 지원활동)를 지원

○ 본인 스스로를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프로젝트로 보지 않음

① 공익단체 활동지원	**인권보장,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민·사회·인권·지역 단체·기관들의 활동증진을 위한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 공익단체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적 경제기업인 경우 기관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심사 진행. (신청전 주최측에 사전 문의 권장) - 종교단체, 특정 정당 지지모임, 단순 취미 동아리 성격의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② 취약계층 지원활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률, 행정규칙, 자치규칙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사회적취약계층(첨부1 참고) - 그 외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소수자'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 발굴 및 제안 가능하며 취약상황 및 지원의 긴급성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인정함.

□ **신청자격**

○ 지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비진학 청년	- '학교 밖 청소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교육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제적・퇴학처분 또는 자퇴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비진학 청년'의 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제적・퇴학처분 또는 자퇴하여 **지원일 현재 최종학력이 초/중/고등학교 졸업인 만34세 이하인 사람**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대안대학, 교육공동체 참여자 지원 가능 *학력인정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재학생 지원 불가
② 창업가 또는 예술가	- '창업가'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창업 준비가 완료되어 본 지원사업 기간에('25년 6월달까지) 사업자등록 또는 창업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 단계의 개인 및 팀 - '예술가' 기준: 공예, 문학, 무용, 시각(사진, 영상 등 각종 미디어 포함), 연극, 음악, 일러스트, 조형 등 창작 및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개인 및 팀 *아직 출판, 등단, 수상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준비활동, 발표활동(ex: 관련 행사 부스 참여,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경우 폭넓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로 인정
③ 수도권 지역	- 본 지원사업 주요일정(대면심사, 지지방문, 결과발표회 등)이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활동 및 사업장(연습실, 작업실) 또는 프로젝트 진행 장소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인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진행

4. 지원내용

□ **프로젝트 지원금 : 프로젝트별 100~210만 원**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또는 평균적인 시장 가격)에 프로젝트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 및 지원 (부가세 및 원천세 포함)

○ 시중 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재료비(실비)를 프로젝트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 및 지원

산출 근거 예시	
(이용자 X 제품·서비스의 실제 판매가격) + 실비	(200명 X 메뉴가격 9,000원)+현수막 5만 원=185만 원
(프로젝트 기간 및 횟수 X 인건비) + 실비	(강의 3회 X 25만원)+실비(차비 등) 10만 원 = 85만 원

○ **학교 밖 청소년·비진학 청년 창업가 및 예술가들의 매출 및 경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절감되거나 횟수(이용자)를 늘리기보다는 지원자의 적정한 이윤 및 인건비가 보장되는 지원금 산정을 권장.**

○ 지원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청 및 집행합니다. 지출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활동 결과 보고로 통합합니다.

□ **프로젝트 협업 : 지지방문, 자원봉사자 연계, 홍보협조, 법률자문 등**

○ 프로젝트 기간동안 1회의 지지 방문 진행

○ 사전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협업 진행

- (예시) 자원봉사자 연계 : 도시락 등을 취약계층에게 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배달을 도울 자원봉사자 2~3인을 모집하여 지원

5.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 절차** : 총 2단계 심사(서류→대면)를 통해 최종선정

1단계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사업계획 보완기간	⇨	2단계 대면심사	⇨	최종선정자 발표
'26.08.18.-20.		**'26.08.20.오후**		'26.08.21.-25.		'26.08.27.		**'26.08.28.오후**

○ 서류심사 합격자들에게는 대면 심사 전에 [사업계획 보완 기간]이 약4일 주어집니다.

○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로 공지드립니다.

○ **지원시 지원 사업 필수일정 참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심사: 2026년 8월 27일 (목) 오후 시간대, 장소 서울 광화문역 인근**
- **결과발표회: 2026년 12월 16일 (수) 오후 시간대, 장소 서울 광화문역 인근**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온라인 신청서 및 가점항목을 토대로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는 최종 선정인원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 **대면심사** : 자기소개 및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토대로 최종 지원자 선정 (15분 내외)

-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발표용 PPT없이, 공통 발표자료로 발표 진행
- 대면심사는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라 할지라도 **프로젝트 내용, 추진 의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지향**합니다. 발표 기법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맛있는 음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면심사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심사위원 3인이 참여 예정.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 지원자의 사업 및 예술 역량을 활용한 프로젝트인가 △ 기대하는 프로젝트의 목표 및 활용계획이 있는가 △ 프로젝트 대상의 수요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 지원금 산출 근거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35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프로젝트와 관련된 준비 활동이 있었는가 △ 프로젝트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실현가능한 사업 내용,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 프로젝트 대상 연계 및 발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25
사회적 가치 창출	△ 지원사업 목적을 이해한 공익활동 프로젝트인가 △ 프로젝트 대상은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대상인가 △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 및 대상을 발굴하였는가	40

□ **가점항목** (선택사항)

○ 사회적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참고1]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자에 한함)

- 세부기준 예외에 관한 안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시설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에 일부 충족되지 않더라도 취약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신청가능합니다.

6.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선정은 무효처리 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와 함께 합니다. 프로젝트 홍보 및 진행 과정에서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측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의무를 가지며, 프로젝트 참여자는 이를 시정 할 의무를 가집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협약이 해지되며, 지원이 중지됩니다.**

□ 최종 선정자는 안내 된 일정에 참석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연락불능, 불참, 협조거부의 경우 지원사업 협약이 해지되며,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되는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불이익은 주최 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의를 환영합니DA!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 (hello@ddd.or.kr / 02-2677-0625)↗

[참고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과 서류

가점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 해야 합니다 (제출시기: 서류심사 합격 이후)

no	대상자	증빙 가능한 서류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수급자증명서 등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주민등록증 등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등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확인서 등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확인서 등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확인서 등
1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결정통지서 등
1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결정통지서 등
12-1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워크넷 구직기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교정시설 수용증명서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소년원 수용증명서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보호관찰기관 증명서
12-5	노숙인	노숙인쉼터 확인서 등
12-6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중독 관계기관 확인서 등
12-7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12-8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중인 가족 관련 서류(수용증명서 등)
12-9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난민인정증명서 등
12-10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 입소확인서
13-1	조손가정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확인서
13-2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여권 등
13-3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등급조회서류
13-4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기관(경찰, 학교, 상담소 등) 확인서
13-5	가정 밖 청소년	지원기관(쉼터, 자립지원관 등) 확인서
13-6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꿈드림, 상담소 등) 확인서
13-7	중증질환자	관련기관 확인서 또는 진단서

- 세부기준 예외에 관한 안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시설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에 일부 충족 되지 않더라도 취약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신청 가능 (예시: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의 경우 입소기간 1년 이상이 세부 기준이나, 1년 미만이라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시 가점 신청 가능)

[참고2] 온라인신청서 작성 항목 안내

○ 계획하고 고민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으시되, 최대 글자 수에 맞추느라 분량을 무리하게 늘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 글자 수는 불필요하게 길게 쓰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안내입니다.

지원자 정보	성명	법인, 단체일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어주세요
	생년월일	법인,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웹사이트	
	신청자격 유형(1)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
	신청자격 유형(2)	□창업가 □예비 창업가 □예술가
	활동지역 (1)	예시: @@시 @@구
	활동지역 (2)	위의 활동 지역이 어디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신 지역인지 선택해주세요 □사업장, 작업장, 연습실 □프로젝트 추진 지역
	자유로운 자기소개	문장형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주요이력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비창업가 및 예술가의 준비활동, 창작활동을 심사과정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공백 포함 최대 500자 미만) *(선택) 기존에 사용하시던 소개 팜플렛, 포트폴리오 파일이 있을 경우 메일(hello@ddd.or.kr)로 제출 해주셔도 됩니다.
	(선택) 사회적취약계층 가점 신청	공고문 참고1 참조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 유형	□공익단체 활동지원 □취약계층 지원활동
	지원 대상(프로젝트 이용자) 제안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단체: 모집 및 발굴하고자 하는 단체의 성격 / 단체명 등 단체의 정보(이력 등) - 취약계층: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고시원 거주자 중 보다 취약한 탈가정 청소년)
	대상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지원자분이 제안한 지원 대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나, 발굴에 참고가 된 기사 등의 자료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세부내용	주요내용: △프로젝트 진행 기간 △프로젝트 실행 내용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방법 △프로젝트 파트너 및 협력기관 (공백 포함 500자 미만)
	현재 프로젝트 진행 단계	□아이디어 구상 단계 □프로젝트 준비 돌입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회의 진행 등) □프로젝트 준비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기타 ()
	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공백 포함 최대 300자 미만
	프로젝트와 관련한 교육 및 활동 경험	공백 포함 최대 300자 미만
	프로젝트 예상 수요인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명) 또는 단체(개)를 숫자로 적어주세요. 1개 단체 및 소수를 지원한다 해도 지원 내용 및 효과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 지원금	100~210만 원 사이 (부가세 및 원천세 포함)
	지원금 산출근거	예시: (이용자 (명) X 제품, 서비스의 실제 판매가격 (원)) + 실비 (원) = 신청금액
	프로젝트 목표	지원자분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공백 포함 최대 300자 미만)
	프로젝트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예상되는 어려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 나눔과이음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심사 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안 드리거나, 자문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